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2026. 1. 1. 시행) 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
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안 제2조)
-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9조)
-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1조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7. 3. ~ 7. 2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
경영하거나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
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실·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회계, 감사, 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해당 지방공기업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 범위, 감사 기간, 평가 기준 및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유찰 등에 따른 특례) ①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법무과 ☎ 940-5981
입안자	예산법무과장	조 우 현
	재정관리팀장	이 주 희
	담 당 자	배 진 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규칙안 제1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등의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과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3. 작성자 :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재정관리팀장 이주희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④ (생략)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⑨ (생략)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회계감사인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규칙 등을 위반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생략)
 - ③ (생략)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2			
정책명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당자명	배진영	전화번호	031-940-59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06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p> <p>예산법무과장 귀하</p>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32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예산법무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배진영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6. 30.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 당	팀장 이주희 담당자 배진영
3. 관련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1조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4.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안 제2조) ○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9조) ○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5. 심사의견	<p>○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p> <p>-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p> <p>-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p>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